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3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3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을 폐기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으로 이관·보관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公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변경함.(안 제1조)
- 나. 공인을 폐기할 경우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함.(안 제9조제2항)
- 다. 고유 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정담당관실에 이관하여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를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무관리규정 제41조</u>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제40조 --- <u>서울특별시의회에서</u>----- ----- ----- -.</p>
<p>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u>의회</u>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 (공인의 종류) ① ---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4조의 공인 관리자는 제1항 또</p>	<p>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